



2009년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제도 개정내용 해설

국세청 납세자보호과 서기관
전 재 원

이번호에는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초 사이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제도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.

그 중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

첫 째,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비율(20%→40%) 및 공제한도(중전 30억원이던 것을 60~100억원으로 개정)를 상향조정 및 사업영위기간을 10년으로 완화하고,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을 연장하였다.

둘 째,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us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

1세대1주택에 대하여 5억원 한도내에서 주택가액의 40%를 동거한 1세대1주택에 대하여 5억원 한도내에서 주택가액의 40%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고 동거주택 인정범위를 규정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.

셋 째,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·납부기한을 조정[상속개시일(증여일)로부터 6월(증여의 경우는 3월)이었던 것을 상속개시일(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(증여의 경우는 3월)로 개정하였다.

넷 째, 분납신청시 종전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이던 것을 납부기한 경과 후 2월 이내로 개정하였다.

1. 기업상속 공제 확대 및 요건 완화 (상증법§ 18, 동법 시행령§ 15④2다)

가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기업상속시 공제 ○ 공제율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상속재산가액의 20% ○ 공제한도 : 30억원 ○ 기업상속의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: 15년 -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(6월)까지 대표이사 취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기업상속 지원 확대 ○ 공제율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상속재산가액의 40% ○ 공제한도 확대 : 60~100억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영위기간별 차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0~14년) 60억원 (15~19년) 80억원 (20년이상) 100억원 ○ 기업상속 요건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영위기간 10년*으로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중소기업 평균 사업영위 기간 11.4년 -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 2년내에 대표이사 취임(시행령개정)

<p>○ 추정사유(10년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- 기업용자산 20%(5년 10%) 이상을 처분 - 상속인이 가업에 미종사 	<p>○ 추정사유 보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인정 <p>(좌 동)</p>
---	--

나. 개정이유

-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비율 및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장수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으로 공제액의 한도*를 사업영위기간별로 차등 적용
- 중소기업 평균 사업영위 기간(평균 11.4년)을 감안하여 이보다 다소 낮은 10년으로 완화
- 비상장주식만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식의 상속세 납부로 인한 지분감소가 발생하므로 최대주주지분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추정 예외사유로 인정
- 상속인이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경영노하우를 습득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09. 1. 1. 이후 최초 상속 개시 분부터 적용한다.

2.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도입 (상증법 § 23의2 신설)

가. 신설된 제도의 내용

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

춘 경우에는 주택가액(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)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.

① 상속개시일 현재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(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)일 것

②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

계속하여 동거하였는지 여부 및 동거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, 취학,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,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
* 취학,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으로 인정함(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§ 9의 2)

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(유치원·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)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

②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

③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

나. 개정이유

-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,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였다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09. 1. 1. 이후 최초 상속 개시 분부터 적용한다.

3. 신고납부 기한 조정(상증법 § 67, 68)

가. 개정내용

증 전	개 정
<p>□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기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속세 :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○ 증여세 : 증여일부터 3월 이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○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

나. 개정이유

-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·납부기한이 월 중간에 도래하여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·납부기한을 경과할 우려가 있고
 -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신고서가 수시로 접수되어 신고서 처리 및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어 개정
 -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·납부 기한을 알기 쉽게 개정하여 납세편의를 제고
- ※ 납세의무가 수시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예정신고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09. 1. 1.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4. 분납 납부기한 개선(상증법§ 70)

가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분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- 분납기한 :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 -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: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-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: 납부할 세액의 50% 이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분납기한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

나. 개정이유

- 납세의무자가 분납을 신청한 경우 그 기한을 일자별로 계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날짜 계산의 착오가능성이 있어
- 통상적으로 납부기한을 월단위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분납의 납부기한도 월단위로 개정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09. 1. 1. 이후 최초로 분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5. 연부연납 제도 개선(상증법§ 71)

가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연부연납 요건(법§71)</p> <p>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②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 ③ 연부연납 세액 상당 담보제공 ④ 세무서장의 허가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연부연납 담보제공(국기법§29)</p> <p>· 금융기관, 신용보증기금 등의 납세보증서 · 금전, 국채 또는 지방채, 유가증권, 양도성 예금증서, 토지 등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요건 완화</p> <p>○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담보가 100% 보증되는 경우에는 신청만으로 가능</p>

나. 개정이유

- 연부연납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가 필요 없는 납세보증보험증권, 납세보증서를 담보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 연부연납 가능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09. 1. 1.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6.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(상증법 § 78)

가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국내에서 보험금등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명세서제출</p> <p>○ 지급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명보험금·손해보험금 (해약환급금, 중도 인출금 포함) - 퇴직금·퇴직수당·공로금등 (연금제외) - 주식·출자지분·공채·사채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용 - 수탁재산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명세 -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명세 <p>○ 가산세 : 미부과</p> <p>*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</p>	<p>지급명세서 미제출·누락제출 및 불명확하게 제출된 금액의 100분의 2 가산세 부과</p> <p>지급명세서 미제출·누락제출 및 불분명한 자료제출분*의명의개서 또는 변경된 금액,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자산의 금액은 1만분의 2, 전환사채등의 발행금액의 100분의 2 가산세부과</p> <p>* 불분명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</p> <p>○ 제출기한 경과후 1월이내 제출시 100분의 1(또는 1만분의1)의 가산세 부과</p>

나. 개정이유

- 지급명세서의 미제출등에 대해서 이미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과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.

* 다만, 위탁 또는 대리업무등 제3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한다.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09. 1. 1. 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발생 분부터 적용한다.

7.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규정 보완(상증법 § 63③)

가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유가증권 상장,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평가 및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할증평가</p> <p>○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분율 50%이하 : 20% (중소기업 10%) - 지분율 50%초과 : 30% (중소기업 15%) <p>* 중소기업은 2009.12.31까지 할증유예</p>	<p>□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할증평가</p>

나. 개정이유

-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할증 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하였다.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09. 1. 1.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8.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 평가 예외규정 개선(상증법시행령 § 54 ③)

가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소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그 주식의 발행주식총수의 10% 이하인 경우</p> <p>○ 취득가액으로 평가가능</p>	<p>○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우선적으로 적용</p> <p>○ 시가평가가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평가 가능</p>

나. 개정이유

- 다른 비상장주식의 소유지분이 10%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나
-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시가평가가 곤란한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09. 2. 4. 이후 최초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9. 중소기업 준용규정 개선(상증법시행령 § 53⑥)

가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 준용</p> <p>*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</p> <p>·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 중소기업</p>

나. 개정이유

- 2009. 2. 3. 기준 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 중소기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 규정을 준용하여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정하였으므로,
-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에 중소기업판정이 곤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하였다.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09. 2. 4.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10.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보완(상증법시행령 § 55 ①)

가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*시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</p> <p>○ 순자산가액 : 자산 - 부채</p> <p>○ 순자산가액이 “0”원 이하인 경우 “0”원으로 간주하는 규정 없음</p> <p>*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:2로 가중평균</p>	<p>○ 순자산가액이 “0”원 이하인 경우 “0”원으로 간주하는 규정 추가</p>

나. 개정이유

- 순자산 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음수로 계산
- 음수로 계산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로 보기 어려움
- 순손익가치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순자산가치의 평가도 음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“0”으로 하여 평가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09. 2. 4.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11.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보완(상증법시행령 부칙 § 3②,③ 신설)

가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'08년에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'08년에 대한 회계감사나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면 -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제1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것으로 봄

나. 개정이유

- 2008. 2. 22. 자로 신설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에서 성실공익법인의 판정을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
-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의 외부감사나 제3호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는 당해 과세연도 경과 후에 가능하므로 2008년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이 불가능
- 2008년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나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면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제1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것으로 개정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08. 1. 1.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12. 임대가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율 개정(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§ 15의 2)

가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(영§50⑦) : MAX[①, ②] ① 임대보증금 +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 ② 법 제61조 제1항~제6항의 부동산 등의 평가방법에 평가한 가액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: 100분의 18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: 100분의 12

나. 개정이유

- 전·월세전환율* (=연간임대료 ÷ 보증금)이 부동산 임대관행상 연간 12%수준**인 점을 감안하여 적용환산율을 연 12%로 수정

* 상가·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월세전환율의 한도는 상가는 연15%, 주택은 연 14%로 규정

** 오피스빌딩 12.7%, 매장용빌딩 12.4%(서울·광역시 평균, 2008년, 국토해양부 자료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09. 4. 23.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